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무인상점"이란 사업장 내 판매원 없이 키오스크 같은 무인주문기를 통해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의 가게를 말합니다. 무인상점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며, 스마트 자금,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의 정책을 통해 무인상점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상점은 특성상 절도 및 물품파손 등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CCTV 설치나 경고 문구 부착, 보안 강화 등을 통해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1
1. 무인상점 창업하기 4
1.1. 창업 전에 알아두기 4
1.1.1. 자금 융자 등 지원 알아보기 4
1.2. 창업 준비하기 5
1.2.1. 창업 전 고려사항 6
1.2.2. 점포 준비하기 9
1.2.3. 사업자등록 11
1.3.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11
1.3.1. 상호 선정 11
1.3.2. 옥외광고물 설치 12
2. 무인상점 운영하기 17
2.1. 운영 및 관리 17
2.1.1. 매장 운영 17
2.1.2. 가맹계약 관리 18
2.1.3. 고객과의 분쟁 해결 21
2.2. 무인상점과 범죄 22
2.2.1. 범죄 예방과 처벌 22
3. 무인상점 폐업하기 25
3.1. 폐업 등 25
3.1.1. 폐업 등 신고 및 재기 지원 25

1. 무인상점 창업하기

1.1. 창업 전에 알아두기

1.1.1. 자금 융자 등 지원 알아보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

제도소개

▪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6. 10. 2. 1면).

지원대상

▪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1면).

※ 다만,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해당 설비,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출 시현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1면).

▪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2면).

< 스마트기술 풀(Pool) >

대분류	세부분류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3D프린팅설비
AI·IOT	AI CCTV, AI 두피분석, AI 가상체험, AI 안면(체형)인식, AI·IOT온도관리시스템, 안면·QR·지문출입인증시스템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주문,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키오스크 단말기
디지털오더	QR/NFC 오더, 테이블 오더
무인판매기	AI 무인판매기, 꽃 무인자동판매기, 무게형 무인판매기, 모듈형 무인판매기, 무인키텍 솔루션, 무인매대 스캐너
로봇	서빙로봇, 헬퍼로봇, 밴딩머신, 조리로봇
사이니지	디지털광고보드, 디지털메뉴보드
전자칠판	스마트 전자칠판
구독형 S/W	고객관리 및 예약 S/W, 매출분석 S/W, 재고관리 S/W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예약관리·원격웨이팅 솔루션, 매장멤버십관리시스템, 공간관리통합관리시스템, 축산 육가공공정시스템

※ 혁신성장촉진자금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533-010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제도소개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은 소비·유통환경이 비대면·디지털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디지털 기반 이용 편의 제공-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사업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디지털 기반 이용 편의 제공-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지원유형별 지원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중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디지털 기반 이용 편의 제공-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507면].

구분		구입형			렌탈형	S/W형		선도형
		보편[1]	그 외	배리어프리		개인	가맹점	
지원내용		일반기술 (서빙·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기, 서빙·조리로봇 2년 렌탈비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		기술 패키지 및 주문제작 기술 구입비
지원한도		500만원		700만원	연 350만원	연 30만원		1,000만원
국비 지원 비율	일반	50%	70%		70%	100%	90%	70%
	우대[2]	60%	80%		80%			80%

1) 보편기술 (2개) : 전자칠판, 사이니지

2) 국비지원비율 우대대상 :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고령 사업주

▪ 지원규모[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507면].

▹ 총 16,000개 내외

▪ 지원금액[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507면].

▹ 총 349억원

※ 온라인 신청: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 문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콜센터 (☎1600-6185)

1.2. 창업 준비하기

1.2.1. 창업 전 고려사항

창업 유형 등

창업 유형

▪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 인건비 절감 • 적은 초기비용 •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 • 적은 관리요소	• 치열한 경쟁 • 매장보안 필수

<출처: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 슈퍼'2호점 개점", 2020.11.20. 1면).

창업 형태 정하기

독립창업

▪ "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창업형태입니다.

가맹사업 창업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란?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맹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정보공개서의 확인

▪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정보공개서"란 다음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운영 현황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가맹본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정보공개서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이때, 가맹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 참조].

※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법령 및 서식자료-관련 서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맹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점포 준비하기

상권 분석

상권 조사

※ **상권조사의 주요항목**

1. 통계자료조사 : 인구수, 세대수,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복합형)
2. 상권형태 및 규모 파악 : 주간상권·야간상권·고정상권·유동상권
3. 통행인구 조사 :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통행인구수, 통행객, 통행 성격, 통행객의 수준 파악
4. 통행차량조사 : 통행차량의 수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나가는지 파악
5. 경쟁점포조사 :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수, 계층·제품의 가격대
6. 상권의 향후 전망조사 : 주변 상권의 확대·축소 가능성, 개발계획 등 파악

< 창업준비 10단계, 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3p >

상권정보의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상공인365(https://bigdata.sbiz.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공내용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전국 동별로 상권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 해당 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

-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의 제공
-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사 지도 제공

점포 계약

개념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계약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계약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권리금에 관한 특약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 ※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하기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 ※ 업종에 따른 영업신고
>
> 세탁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므로 창업하려는 업종이 영업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1.3.1. 상호 선정

상호의 선정

상호 사용권

▪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상법」 제18조 및 제20조).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상호 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보호

상호의 등기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상법」 제34조).

▪ 상호를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참조].

상호의 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1.3.2.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하기

옥외광고물 유형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옥외광고물의 예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분	내용
벽면 이용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등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위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역, 장소 및 물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건설기계,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목)

> ※ 이 경우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위의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대상 광고물 등	위반내용	제재 내용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외의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밖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참조).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옥외광고물 설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인상점 운영하기

2.1. 운영 및 관리

2.1.1. 매장 운영

CCTV 설치 및 관리

CCTV 설치

▪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참조).

▪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안내판 설치

▪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CCTV 열람

▪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장애인 편의 증진

▪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함) 설치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함)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

2.1.2. 가맹계약 관리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가맹계약 갱신

가맹계약 갱신하기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 해지하기

▪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8호 및 「민법」 제543조).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맹본부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다시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통지 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가맹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고객과의 분쟁 해결

소비자와의 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교환 기준

√ 물품 등(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포함)의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본문).

√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단서).

▸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본문)

√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단서).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단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물품 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대상품목' 중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의 피해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무인상점과 범죄

2.2.1. 범죄 예방과 처벌

범죄 예방하기

포스터 및 경고 문구 부착

▪ 해당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구비하고 있는 범죄 예방에 관련된 포스터나 본 사업장은 무인으로 운영되어 CCTV를 촬영한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 범죄 예방 포스터 및 경고 문구 예시





<출처: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8392>

보안 강화

▪ 무인상점은 특성상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도 행동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어 지폐 교환기 등 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7295).

▪ 보안 강화 예시

		
양심 거울	분실카드 안심보관함	무인결제기 안심 문 열림 센서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7202>.

출입시스템 강화 검토

▪ 무인상점은 특성상 출입 후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장들은 출입 시 신용카드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 이 경우, 출입자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입증이 쉬워집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 출입 인증기

	

<출처: 대한민국정부블로그, '[한국판뉴딜현장체험]⑧디지털한숟갈더했더니, 동네슈퍼가똑똑해졌어요<스마트슈퍼>>

위생관리

▪ 야간에 주취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흩트려 놓거나, 흐트러진 물건에 걸려 넘어져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무인상점 대상 범죄

관리인력 부재로 인한 도난

▪ 무인상점은 관리인력 부재로 인해 도난 등의 보안 상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경기도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온라인학습-무인상점 둘러보기). 무인상점 내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상점 내 물건을 절취하는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키오스크 및 물품 파손

▪ 무인상점 운영 시, 키오스크 혹은 상점 내 물품 등의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무인상점 내의 키오스크 및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및 상점 내 물품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

▪ 키오스크 결제 후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3. 무인상점 폐업하기

3.1. 폐업 등

3.1.1. 폐업 등 신고 및 재기 지원

폐업 신고하기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세금 완납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폐업 및 재기 지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 정부는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폐업 및 재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